

제 정	2014.07.22
개 정	2018.11.29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식회사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제 2 장 구 성

제 2 조 (구 성)

제 3 조 (위 원 장)

제 4 조 (해 임)

제 3 장 운 영

제 5 조 (위 원 회)

제 6 조 (소 집 절 차)

제 7 조 (결 의 방 법)

제 4 장 권한 및 의무

제 8 조 (권 한)

제 9 조 (의 무)

제 5 장 기타 사항

제 10 조 (보 고 의 무)

제 11 조 (간 사)

제 12 조 (경 비)

제 13 조 (규 정 의 개 폐)

제 14 조 (적 용 범 위)

부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제 구축을 통해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상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계열회사간 대규모 내부거래를 사전 심의하는 내부거래위원회를 정관 제 32 조 제 1 항 제 4 호에 의거하여 이사회 내에 설치하고, 그 구성, 운영 및 권한, 의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구 성

제 2 조 (구 성)

위원회는 3 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위원 총수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제 3 조 (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3.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조 (해 임)

위원의 해임은 이사 총수의 3 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의로서 가능하며, 이사회는 해임, 이사의 임기만료 또는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 지체없이 충원을 해야 한다. 다만, 신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를 선임하고, 이어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신규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 3 장 운 영

제 5 조 (위원회)

위원회는 상, 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소집절차)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 소집시기는 회의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늦어도 24시간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모사전송방식, 기타 발송 및 착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7 조 (결의방법)

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4 장 권한 및 의무

제 8 조 (권 한)

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항으로 한다.

1. 내부거래 보고 청취권 및 사전 심의 의결권
위원회는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을 수 있다.
단,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 거래 항목 중 50억원 이상 거래는 사전 심의하고, 50억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내부거래위원회 간사가 중요한 거래라고 판단하는 거래에 대해 사전 심의 의결한다.
2. 내부거래 직권 조사 명령권
위원회는 언제든지 간사에게 내부거래 세부 현황 자료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3. 내부거래 시정 조치 건의권

위원회는 법령 및 회사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 9 조 (의 무)

위원회의 의무는 다음 각 항으로 한다.

1. 선관주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2. 이사회에 대한 조사보고 의무

내부거래위원회 간사로부터 반기 1 회 이상 내부거래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하며, 회사가 법령 또는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하는 내부거래를 한 경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의사록 작성의무

위원회는 회의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심의 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심의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타사항

제 10 조 (보고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결의 일로부터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간 사)

1.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2.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회 사무전반을 처리한다.

제 12 조 (경 비)

위원회의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 13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 14 조 (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내부거래 관련 사항은 이사회 및 경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 년 7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